

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제 안 경 위

- 발 의 자 : 김 경 의원 외 8명
- 의안번호 : 제2236호
- 발의일자 : 2024년 10월 16일
- 회부일자 : 2024년 10월 18일

2. 제 안 이 유

- 서울특별시 가로수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「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도시녹화와 경관향상을 위하여 가로수 조성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여 관리 방안을 적극 마련하고자 함
- 시장의 가로수 조성 심의사항의 범위를 확대하고, 식재기준에 있어 ‘도로별 식재 조성 기준’(별표 3) 및 ‘도로별 가로수 식재 크기’(별표4)를 조례상 세분화하여 가로수 조성 및 유지관리를 위한 세부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

3. 주 요 내 용

- 가. 가로수 도로별 식재 기준 신설(안 제7조의2 신설)
- 나. 가로수 심의위원회 심의사항 추가(안 제7조의3제3호 신설)

다. 별표 3에 도로별 식재 조성 기준 신설(안 별표 3)

라. 별표 4에 도로별 가로수 식재 크기 신설(안 별표 4)

4. 참 고 사 항

가. 관계법령 : 「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(미첨부사유서) 참조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 참조

5. 검토 의견

가. 개요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가로수 조성 심의사항의 범위를 확대하고, ‘도로별 식재 조성 기준’(별표 3) 및 ‘도로별 가로수 식재 크기’(별표 4)를 세분화하여 가로수 조성 및 유지관리를 위한 세부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.

나. 검토의견

- 기후변화와 도시화에 따른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농도 증가 등 환경문제로 인한 도시 생활환경이 악화됨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, 대기정화와 기후변화 완화의 기능을 가진 숲과 녹지의 기능이 부각되고 있음.

특히, 가로수는 도시에서 녹지를 확보해 숲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시설로 인식되고 있으므로 이를 위한 세부적인 조성 및 유지관리 범위를 정하여 활성화하려는 본 조례안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판단됨.

- 동 조례 제7조1)에서는 가로수의 식재 기준을 교목, 관목 등으로 구분하여 정하고 있으나, 도로별 식재 기준은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있음.

1) 「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」 제7조(가로수의 식재 기준) 가로수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식재하여야 한다.

1. 교목

가. 식재간격은 6~8미터를 기준으로 한다. 다만, 도로의 위치와 주위여건, 식재수종의 수관폭과 생장 속도, 가로등의 위치, 가로수로 인한 피해 등을 고려하여 식재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.

나. 식재유형은 도로선형과 평행한 열식을 원칙으로 하되 도로의 여건, 방음·녹음제공·경관보정 등 특정목적에 따라 군식·혼식할 수 있다.

다. 도로의 한쪽을 기준으로 1열심기를 하고 보도의 여건에 따라 2열 이상 식재할 수 있다.

라. 도로의 같은 노선과 도로 양측에는 같은 수종으로 식재한다. 다만, 도로의 방향이 바뀌거나 도로가 신설·확장되는 경우에는 같은 노선일지라도 다른 수종으로 식재할 수 있다.

2. 관목은 식재수종의 특성에 따라 아름다운 경관조성과 교통장애가 없는 범위에서 식재할 수 있다.

3. 식재공간의 여유가 있는 경우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과 도로구조의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교목과 관목, 초본류를 다층구조로 식재할 수 있다.

4. 지하의 인공구조물로 인하여 가로수의 식재가 어려운 지역은 저수장치 등을 갖춘 이동식 화분형에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.

안 제7조의2는 차도와 보도의 폭, 보행자 수 등을 고려하여 가로수를 조성·관리하도록 하고, 특히 신설되거나 변경되는 도로의 경우에는 도로의 보도 폭에 따라 노선별로 가로수의 크기를 조정하여 식재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됨.

- 다만, 안 별표 3에서 보도폭에 따라 소로(1열), 대로(2열), 광로(2열 또는 3열)로 구분하였고, 식재 층위의 경우 단층식재(소로), 다층식재(중로 또는 광로)로 분류하였으나 현장의 도로 환경에 따라 조성 여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업 추진 시 기준을 합리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안 별표 3 및 별표 4의 '비고'와 같이 재량²⁾을 부여한 것은 타당하다 판단됨.

2) 별표 3 '비고' : 현지 및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성 기준을 다르게 할 수 있음

별표 4 '비고' : 현지 여건 및 식재방법, 수종 등에 따라 식재 크기를 다르게 할 수 있음